**문제1.**

**<1-1>**

1. 사업인정, 고시 의의 (20, 22조)
2. 법적성실
3. 처분, 형성력
4. 재량행위
5. 제3자효
6. 효력

사업시행자: 수조협재/ 피수용자: 보, 재, 당

**<1-2>**

1. 쟁점의 정리
2. 이의신청의 법적성질
3. 이의신청 의의 (83조)
4. 법적성질 및 요건: 요건 + 특별법상 행정심판 🡪 행심재결
5. 원처분주의
6. 의의 (19조)
7.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경감된 내용의 변경처분)
8. 토지보상법 판례 (34조 재결 원칙이나 재고하는 이의재결 가능)
9. 사안의 경우 (재고하 제시 안 됐으므로 원처분주의대로 수용재결이 대상)
10. 피고적격
11. 의의 (13조)
12. 사안의 경우 (관할 지토위)
13. 피고적격
14. 사안의 해결

**<1-3>**

1. 쟁점의 정리
2. 보증소

1. 의의

1. 형태, 성질
2. 요건
3. 범위
4. 심리, 판결, 법원조치
5. 사안의 해결

**문제2.**

**<2-1>**

1. 쟁점의 정리
2.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3. 이의신청의 의의 및 성질 (11조) : 임의주의
4.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5. 학
6. 판
7. 검
8.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9. 개공 의의, 성질 : 처분
10. 토가비 의의 및 법적 성질: 법보행
11. 토가비 적용의 위법성 (판례) : 가격배율 모두 적용 안하면 무효
12. 사안의 해결

강학상 이의신청, 행심제기 가능, 개공 하자 무효

**<2-2>**

1. 쟁점의 정리
2. 하자승계 인정 여부
3. 의의
4. 요건
5. 견해
6. 전통적 견해론
7. 새로운 견해론
8. 판례

개공 인정, but 불복 할 수 있었는데 안한경우 인정 x

1. 검토
2. 무효인 경우
3. 사안의 해결

하자승계 인정 x, 인용 x, 기각

**문제3**

1. 쟁점의 정리
2.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3. 집행정지 의의
4. 요건
5. 신청요건
6. 본안요건
7. 사안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영상 이익 인정된다면 인용

1. 징계 효력
2. 징계와 징계위원회 의의 법적성질 (39, 40)

징계 재량행위, 징계위 의결에 국장 구속

1. 국장의 조치
2. 하자 있는 징계 (의결 없는, 의결에 반하는 🡪 무효)
3. 조치 : 의결내용 대로
4. 사안의 해결

회복할 수 없는 🡪 집행정지 인용 가능, 징계효력: 업무정지/ 국장은 구속

**문제4**

1. 사무소 개설 등 (21조 1항)
2. 개설 등: 개설은 신고 대상 아님/ 5인 이상시 개설/ 주 2, 부2 (틀림.. 법인 내용임)
3. 감정평가법인 등 (감법 2조 정의): 사무소 개설한 감정평가’사’
4. 소속평가사 관련 (21조 5항)

소속평가사 아닌 자에게 10조 업무시 50조 2항 징벌